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남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8
----------	-------

발의년월일 : 2017. 9.

발의자 : 백남환,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서종수,
송병길,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차재홍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나.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관계기관의 협조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3.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17. 9.18. ~ 9. 22.(제출된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

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범죄피해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서울 마포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협력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1~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범죄피해자 지원료 예상비용은 연 40,000천원으로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안상협
연락처	02-3153-8806